

접 수	의안과 - (2016. 01. 28.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1월 28일

청 원 인

성 명 : 이준서

주 소 :

전화번호 : 없음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준서
건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p>소개의견:</p> <p>기자들이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정당한 기사를 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당하게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고소 및 고발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자들의 정당한 언론행위와 기자활동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소내용으로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언론인들은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빼앗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p>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기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취재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숨겨진 진실이나 특정인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기사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활동은 종종 법적인 고소, 고발로 막히곤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조 1항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자가 공인이고, 기사 내용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해당 법 조항의 악용 사례입니다. 실제로 권력비리 등을 자주 공론화시키는 기자들은 다수의 법적 대응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PD수첩에서 2014년 5월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재정비리 의혹에 대해 방송했는데,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에서는 허위보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광우병' 관련, '대형 치과 체인 발암물질 의혹 보도'에 사건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계속해서 당사자들이 패소하는데도 이러한 보도에 대한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언론인들이 형사소송에 패소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승소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언론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언론인에게는 엄연히 사실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여러 방안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함으로써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2. 주요골자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③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로 법적 고소 및 고발을 원할 경우, 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다.

제24-1조(고소, 고발 사전 중재) ① 동법 제5조 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인의 전문성, 내용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권고 조치를 내린다.

② 해당 방송을 제작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언론인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나. 2년 이상 언론인으로 활동해왔으며 그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사를 공표해올 것.
- 다. 법적으로 언론사라고 인정되는 언론사에 종사할 것.

③ 직무상 제작하는 방송이나 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내용의 객관성을 충족시켰다고 본다.

- 가. 언론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 나. 그 내용이 증명 가능한 다수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
- 다. 증명 가능한 사실을 결부시킨 추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임을 제시

해 의혹임을 강조한 것.

라. 확정적 표현을 지양한 것.

④ 7인간의 심의를 통해 양측에게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당성이 입증된 기사의 경우 법적 고소 및 고발 제재 권고 조치할 수 있다.

⑤ 4항의 제재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를 판결에 고려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한 측이 패소 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3. 신구문 대조

현행	개정문
<p>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p> <p>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p> <p>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③ <u>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로 법적 고소 및 고발을 원할 경우, 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다.</u></p>
<p>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p>	<p>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p>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1조(고소, 고발 사전 중재) ① 동법 제5조 3

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인의 전문성, 내용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권고 조치를 내린다.

② 해당 방송을 제작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언론인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나. 2년 이상 언론인으로 활동해왔으며 그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사를 공표해올 것.

다. 법적으로 언론사라고 인정되는 언론사에 종사할 것.

③ 직무상 제작하는 방송이나 기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내용의 객관성을 충족시켰다고 본다.

가. 언론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나. 그 내용이 증명 가능한 다수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

다. 증명 가능한 사실을 결부시킨 추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임을 제시해 의혹임을 강조한 것.

라. 확정적 표현을 지양한 것.

④ 최대 7일간의 심의를 통해 양측에게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당성이 입증된 기사의 경우 법적 고소 및 고발 제재 권고 조치할 수 있다.

⑤ 4항의 제재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를 판결에 고려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한 측이 패소 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연 번	석 원 명명	날 인	조 속 정 당	소 속 위 원 회	날 선 개 구	비 비 쿤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